

차례.....

I. 프랜차이즈 피해예방을 위한 용어 알아보기

II. 가맹사업에 특성 및 가맹사업사업법 이해하기

III.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 1) 계약체결 전 단계
- 2) 계약체결 단계
- 3) 계약체결 후 단계
- 4) 가맹사업 운영단계

IV. **쑈!**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주요피해사례]

- 1) 허위·과장 정보제공관련
- 2)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 3) 거래상대방 구속
- 4) 부당한 강요
- 5) 영업지역 침해

V. 프랜차이즈관련 정보 알 수 있어요.





I

프랜차이즈 피해예방을 위한 용어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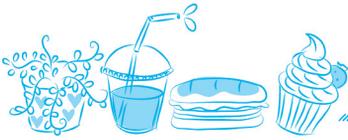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기술 등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영업방식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지속적인 거래 방식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가맹희망자 :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



가맹점운영권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가맹금 : 명칭이나 지급형태에 상관없이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지역본부 :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

가맹계약서 :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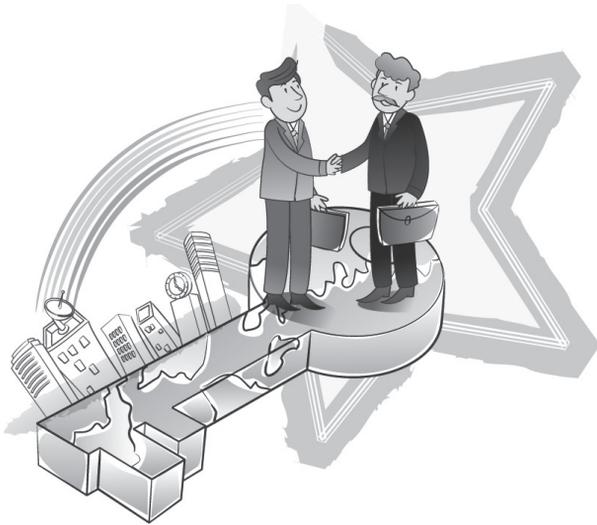
가맹중개인 :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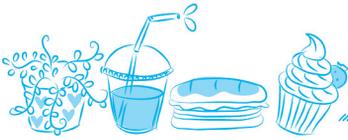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률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이 수록된 문서



점포환경개선 :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

영업지역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





II

가맹사업의 특성 및 가맹사업법 이해하기

1) 가맹사업의 특성

조 건	내 용
1.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그 상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
2.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 가맹점주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님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님.
3.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
4. 지속적인 거래	-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님.





2) 가맹사업법 이해하기

가맹사업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이 200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의 주요제도】

①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및 제7조)

구 분	내 용
의 의	가맹계약 체결을 하기 전 가맹본부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전까지 제공하도록 한 제도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가맹사업법 제9조)

구 분	내 용
의 의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출·수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며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한 제도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가맹금 반환(가맹사업법 제10조)

구분	내용
의의	<p>가맹본부가 특정한 범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창업희망자 또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중요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시 가맹금 반환 가능 - 창업희망자 또는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 2개월 이내(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에는 중단일부 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④ 가맹금 예치 제도(가맹사업법 제6조의5)

구분	내용
의의	<p>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p> <p>※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음(현재 서울보증보험이 관련 상품 취급)</p>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범위】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가맹금을 다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2개 항목(가입비 등, 보증금)이 예치대상 가맹금임.

유형	내용	비고
가입비 등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개점행사비는 예치대상 가맹금에 해당
보증금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지급 담보를 위한 대가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해당
상품가격 등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정기적 비정기적 지급	계약에 의해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가	
기타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은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만 해당(예를 들어 보증금을 현금이나 담보 설정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예치할 필요가 없음)



5 가맹계약 갱신요구 거절금지(가맹사업법 제13조)

유형	내용
의의	<p>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가능 - 계약종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6 가맹계약 해지절차 제한(가맹사업법 제14조)

유형	내용
의의	<p>가맹본부가 계약해지 시 가맹점주에게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기회를 주고 가맹점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함.(시행령 제15조)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해지는 무효

7 분쟁조정제도(가맹사업법 제16조 내지 제25조)

유형	내용
의의	<p>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p> <p>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은 공익대표, 가맹본부 이익대표, 가맹점주 이익대표 각 3인 총 9인으로 구성 -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처리하며 순수 민사사건이나 소송 계류 사건 등은 제외됨.(비용 무료)
분쟁조정 효과	분쟁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



III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1 계약체결 전 단계

[자기진단]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정하기 전 자기 자신의 투자여력, 경영능력, 경영의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 ① **투자여력** :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 사업자금 부족 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 최소 3개월간 초기 운영자금은 있는가?
- ② **경영능력** : 창업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맞는 기술이나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서비스나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창업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업무나 유사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 나의 성격이 판매업종에 적당한 성격이며 리더쉽이 있는가?
- ③ **경영의지** :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할 수 있으며 일 할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 프랜차이즈 창업을 투자용인가 생계용인가?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단점』

▶장점

- 초보자가 쉽게 경영할 수 있다.
-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신뢰를 확보하기 쉽다.
- 시장변화나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비교적 과학적으로 대응한다.

▶단점

- 모든 체인점에 똑같은 상품, 영업방침, 홍보방법을 적용한다.
- 마진율이 독립점에 비해 박하고, 투자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 본사와 동반 추락할 위험이 있다.
- 부실업체를 만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조사】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자와 상담, 창업박람회 참석, 서울특별시 창업스쿨, 눈물그만(민생침해 신고·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등을 통해 관심업종에 대해 사전조사 및 교육을 받습니다.

【계약할 가맹본부 선정】

A: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2~3개 가맹본부를 후보로 선정합니다.



-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르기 위한 체크리스트 -

항 목	내 용
상품 · 서비스 수요	- 가맹본부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가?
경쟁 우위성	- 같은 상품끼리 경쟁하는 경우 어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사업 운영능력	- 가맹본부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상 경영상태는 양호한가?
가맹본부 인지도 및 평판	- 가맹본부의 경영이념은 어떠한가? - 상호 및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는가? - 가맹본부가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가? -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 가맹점주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 동종의 몇 군데 가맹 업체에 문의하여 비교해 봤는가? - 서울에는 체인이 없고 중소도시에만 가맹점이 있지는 않은가?
교육훈련 및 지원서비스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교육 · 훈련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가?
가맹본부의 경험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 왔으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가?
성장성/내실경영	- 가맹본부의 매출액, 가맹점 수 등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가? - 가맹본부가 영업이익 증가 등 내실경영을 하고 있는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 확장에만 신경 쓰며, 그 결과 무리하게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지는 않은가? - 본사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특히 사장실이나 상담실이 필요 이상으로 고급스럽지는 않은가? - 제시하는 자료가 사업전망에만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B: 선정된 프랜차이즈 본사 후보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고, 관련 상세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 예상수익·마진율·비용자료 등은 꼭 서면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의거 창업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정보공개서 표지를 꼭 확인합니다.

등록번호, 최초·최종 등록일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없다면 꼭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지표를 확인하여 가맹본부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가 많은 경우 영업지역 보장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표권, 서비스표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장래에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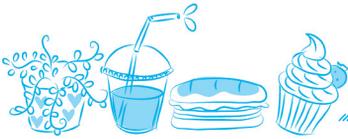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해 봐야합니다.

가맹점의 총 수보다는 변동현황을 파악해 봐야합니다. 계약종료 및 해지건수가 많은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많거나 가맹본부의 관리가 부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 업종 브랜드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다면 브랜드 차별화가 되지 않아 해당 가맹사업 매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기재된 경우, 그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열람을 요구하여 확인합니다.(실제 매장을 방문하여 상권, 방문고객 수 등을 파악함으로써 연간 평균매출액이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맹지역본부와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부여한 권한에 대해 확인합니다.(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 권한 부여내역 등을 확인함으로써 장래의 분쟁 발생 소지를 차단합니다.)



4. 가맹본부 임원의 범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가 어떤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가맹점주의 부담에 대해 확인합니다.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최초가맹금(가입비, 교육비, 개점행사비 등), 보증금 등의 부담내역 확인(최초 가맹금 뿐만 아니라 사업시작 비용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 영업 중의 부담 :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지비용 등 부담내역 확인
- 계약종료 후의 부담 : 재가맹비, 추가교육비, 리모델링비 등 부담내역 확인, 가맹점운영권 양도·양수 시 부담하는 비용내역 확인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가능한 상품의 범위와 가격결정의 자율성이 있는지, 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의 구입이 얼마나 가맹본부에 구속되는지 확인합니다.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계열회사 포함)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필요 시 직영점,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및 거절(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를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광고판촉의 지원범위와 가맹점 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영업개시와 관련하여 개점 절차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합니다.

8.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필수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훈련 불참 시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되었는지, 그 내용이 등록된 것과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열람하는 법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홈페이지 접속

→ <https://franchise.ftc.go.kr/index.do>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FTC Franchis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가맹사업 소개, 정보공개서, 법령 및 제도, 피해구제, and 민원참여. The central banner features the text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함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Working together to establish a fair trading order in franchise business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ctions for '공지사항' (Notice), '법령 및 제도' (Laws and Regulations), '피해구제' (Dispute Resolution), and '정보공개서'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The '정보공개서' section lists various documents with their dates, such as '대안달발 1979' (2014-04-22), '되지달발 수' (2014-04-22), '리뷰달발 코어' (2014-04-22), and '다수인' (2014-04-22).

2. 정보공개서 클릭 → 정보공개서 열람

This screenshot shows the same homepage as above, but with the '정보공개서'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tab selected. The '정보공개서' section now displays a table with columns for '회사' (Company), '도/시/군' (Region/City/Gun), and '서비스' (Service). The first entry is '다수인' (Majority Share) under '정보공개서' in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for '2013-05-06'. The rest of the page content remains the same as in the previous screenshot.



3. 상호/영업표지 부분에 찾고자 하는 브랜드 이름 입력 후 검색

공개서열람 Fair Trade Commission > HOME > 정보공개서 > 공개서열람

가맹점 사업자수 낮은순 전체 10개미만 10~30개 30~50개 50~100개
 높은순 해체 100~200개 200~500개 500~1000개 1000개이상

직영점 사업자수 낮은순 전체 10개미만 10~30개 30~50개 50~100개
 높은순 해체 100~200개 200~500개 500~1000개 1000개이상

가맹+직영점 사업자수 낮은순 전체 10개미만 10~30개 30~50개 50~100개
 높은순 해체 100~200개 200~500개 500~1000개 1000개이상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낮은순 전체 1천만원미만 1천~3천만원 3천~5천만원 5천~7천만원
 높은순 해체 7천만~1억원 1억~1억5천만원 1억5천만~2억원 2억원이상 산정불가

창업 소비자용 낮은순 전체 1천만원미만 1천~2천만원 2천~4천만원 4천~7천만원
 높은순 해체 7천만~1억원 1억~1억5천만원 1억5천만~2억원 2억원이상

대표업종 상호/영업표지 검색 > 페이지당 10 건 보기

공개서비교 * 4개 까지 비교 가능

4. 해당브랜드 클릭!

공개서열람 Fair Trade Commission > HOME > 정보공개서 > 공개서열람

* 아래 자료는 정보공개서 내용 변경 등을 이유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화면에서 열람 또는 출력된 정보는 법적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등록현황

상호	(주)씨에이치월드푸드	대표자	조철희	대표연속	기타외식
영업표지	대한달걀1979	등록번호	20140290	최초등록일	2014-03-28
최종등록일	2014-03-28				

가맹본부 일반현황

브랜드 수	1 개		
법인영업등기일	2013-03-11	사업자등록일	2013-04-11
전화번호	02-552-1979	팩스번호	02-552-1979
개인/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가맹사업 개명사수	0 개

최근 3년의 재무상황

연도	총자산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0	0	263,464	0	0
2012	133,588	127,701	5,887	447,903	35,093
2011	117,819	117,531	288	162,147	12,875

2013년말 직점점 수

연도	점점수	직점수
2013	2	0

가맹사업 현황



5. 공개서 열람 가장 끝부분 까지 보면 정보공개서 보기 아이콘 클릭

*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계약기간(년)		영업지역 보호여부
최소	연장	
20	20	

* 영업개시 소요기간 및 교육 훈련 시간

영업개시 평균 소요기간(월)	교육훈련 시간(분)	
		최초교육

* 브랜드 소개

*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정보공개서 내용을 무단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포함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보기
정보공개서 오류신고

❖ 반드시 체크할 부분 ❖

- 직영점, 가맹점 점포 숫자와 연도별 점포 신규, 계약종료, 계약해지 숫자(이를 통해 브랜드가 성장세에 있는지 영업이 잘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범위반 사실
- 가맹계약기간과 영업지역보호





2 계약체결 단계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조항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정보공개서나 홍보자료 등에 있는 내용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가맹본부는 최소한 1일 전에는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 조문별 내용을 검토해 보고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하여 검토수정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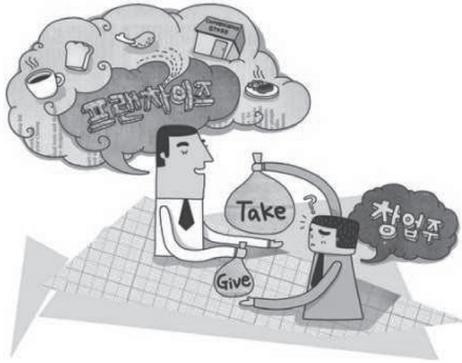




【가맹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19개 필수 기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p>가맹 사업법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주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가맹점주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p>가맹 사업법 시행령 제12조</p>

(계약체결 과정에서 문제발견 시, 계약체결을 보류하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한 후에 계약체결을 합니다.)



- 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가맹본부 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말로만 하는 약속 등은 후에 분쟁 발생 시 문제가 야기되므로 반드시 관련 약속 내용들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차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 측에서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수정 보완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정보공개서 숙고기간(14일 또는 7일)이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 등 절차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합니다.

※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이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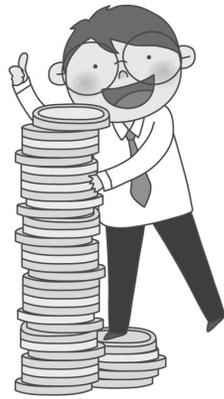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①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②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맹금의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아래 가맹금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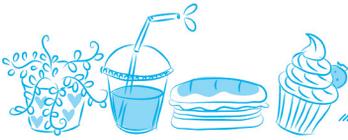


※ 가맹금 예치기관:

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은행·우체국 (2011년 7월 현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 가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체결 후 단계

- ①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맹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에 대한 지급보류 요청을 합니다.
- ②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중요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 운영단계

① 가맹계약의 갱신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입니다. 따라서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간 가맹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④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의 중단일 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 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IV **싹!**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주요피해사례]

1) 허위·과장 정보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등에 대한 문제

2010년 12월 5일 김△△씨는 외식업체 ○○설령탕 동탄점 운영을 희망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비 50만원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2월 28일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받고 당일 가맹금 8천2백25만원을 지불하였다.

가맹본부에서는 오픈하는 매장의 예상 월 매출액을 6천6백 30만원, 순이익을 2천 19만4천원이라고 분석하여 김△△씨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15개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3천만원 정도였으며 동탄점의 경우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의 입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가맹본부에서는 전체 가맹점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2개의 가맹점에 해당하는 월평균 매출액 6천만원 이상을 월평균 매출액으로 제시했으나 김△△씨의 월 매출액은 2천3백만원 월평균 순이익은 49만원이었다.

2)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김□□씨와 이△△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네에서 A가맹본부의 제과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계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이전하거나 확장해야 한다는 합의각서 체결을 강요하였다. A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매장 중 확장이나 이전을 요구한 매장은 63개 매장이었고 이중에서 30개 매장은 확장이나 이전을 하여 재계약을 하였고 23개 매장은 폐점하였다. 김□□씨와 이△△씨는 자금부족으로 본사가 정한 기간 내에 확장이나 이전을 하지 못해 폐점하기에 이르렀다.



3) 거래상대방의 구속

A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물품 구입 및 임차’ 조항에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튀김기, 오븐기, 냉장고, 그릇, 주류를 구입하여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A 가맹본부는 자신과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박▲▲씨와 정▲▲씨 등 5 명의 가맹점주에게 주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적으로 구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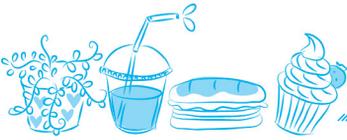
4) 부당한 강요

이□□씨는 효창동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에서 ○○텔레콤 등 통신회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부담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

5)영업지역의 침해

정△△씨는 □□커피숍 가맹본부와 계약을 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개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본사가 정씨의 가맹점에서 불과 120m 떨어진 동일 상권 내에 직영점을 개업하여 정씨 매장의 매출이 줄어들어 적자운영을 하게 되었다.





V

프랜차이즈관련 정보 알 수 있어요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1. 일 시 : 매주 금요일 9시~18시 (1회 상담시간 : 50분)
2. 장 소 : 서울시청 1층 상담실(5호)
3. 예 약 : 다산콜센터(전화120) 또는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
(www.seoul.go.kr/tearstop/)

〈프랜차이즈 관련 유관기관 및 창업교육기관〉

- 유관기관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공정 거래 위원회	종합 상담실	02-2023-40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02-2056-0000
			대한상사중재원	02-551-2000
	서울 사무소	02-3140-9676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61
			소상공인진흥센터	1588-5302
산업통상자원부 (가맹사업진흥정책)	1577-0900	대한가맹거래사협회	02-585-772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02-3471-813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정책)	국번없이 1357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	02-421-1197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교육기관

기관명	주요업무	연락처
서울시 창업스쿨	창업교육	http://www.school.seoul.kr/index.jsp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교육	02-6003-3531
소상공인진흥원 (www.seda.or.kr)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042-363-7761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77개 분소 포함)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1588-5302





▶ 발행처 : 미래소비자행동

▶ 발행인 : 김 영 주

▶ 편집인 : 이 정 수

▶ 발행일 : 2014년 4월

www.consumeraction.or.kr

- 본 자료는 소비자기본법 제13조, 14조에 근거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법규정을 준수합니다